

현금카드 이용약관 (구 외환은행)

이 현금카드이용약정서(한가족카드이용약정서)는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체결한 계약에 의거 현금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이용하는 고객(이하 "이용자"라 한다)간의 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카드사용내역 확인) ①이용자가 카드로 입·출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통장을 정리하여 카드에 의한 거래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으면 정당한 거래로 본다.

② 예금주가 가맹점에서 결제거래시 은행은 이용명세를 예금주의 통장(결제계좌)에 기재 함으로서 이용명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2012.9.18 신설)<신설 2012. 9.18>

제2조(카드의 이용<개정 2012. 9.18>) ① 현금자동지급기(이하 "CD"라 함), 자동입출금기(이하 "ATM"이라 함) 및 온라인 단말기에 의한 1회 입·출금액 및 취급시간은 은행이 영업점에 게시한 바에 따른다.

② CD, ATM에 의하여 작성되는 전표와 온라인단말기에 의한 인출 청구서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지급청구서나 입금의뢰서를 대신한다.

③ 최근 1년간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의 1일 및 1회 출금(인출 및 이체)한도를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출금한도가 하향 조정된 고객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본인 확인후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2. 6.26, 2015. 5. 1, 2015. 5.27>

④ 1회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이 지연될 수 있다. 다만, 타점권으로 입금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신설 2012. 6.26, 2015. 5.27, >

⑤ 예금주가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 가맹점에서 일시불에 한하여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12.9.18 신설)<신설

2012. 9.18>

⑥ 카드 거래시 당행 및 참가은행은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사전에 은행에 신고된 자료와 일치할 경우 이용자를 예금주 본인으로 인정하고 거래에 응한다. (2012.9.18 신설)<신설 2012. 9.18>

다만, 은행과 소액거래(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하여 본인확인 생략 특약을 체결한 가맹점에서는 카드의 비밀번호 입력 생략이 가능하다. <신설 2016.2.1>

⑦ 가맹점에서 카드이용 후 이용대금이 예금주의 결제계좌에서 자동 출금되어 거래가 종료된 이후에 예금주가 반품, 취소 등의 이유로 가맹점과 합의하여 해당거래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이 정한 바에 따라 가맹점의 카드단말기를 통해 취소할 수 있으며, 이경우 은행은 예금주의 결제계좌로부터 출금하였던 금액을 같은 결제계좌로 입금한다. (2012.9.18 신설)<신설 2012. 9.18>

⑧ 가맹점에서 거래취소시 부득이한 여건에 의하여 단말기에 의한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 예금주는 가맹점으로부터 해당 대금을 직접 환불받는 방법 등으로 해결하기로 하며 은행은 동 처리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012.9.18 신설)<신설 2012. 9.18>

⑨ 온라인 마감, 결산을 위한 일시 전산가동 중단시 및 예금잔액 확인을 즉시 할 수 없어 가맹점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2012.9.18 신설)<신설 2012. 9.18>

⑩ 전업계카드사 제휴 체크카드 겸용 현금카드의 경우, 현금카드 최초 거래 이전에 영업점, CD/ATM 등을 이용하여 현금카드 사용등록을 하여야 거래할 수 있다.<신설 2013. 4.16>

제3조(카드의 분실·도난신고 및 면책) 이용자가 카드의 분실, 도난, 훼손, 오손 하였을 때에는 즉시 은행 영업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소액거래(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하여 카드의 비밀번호 생략으로 결제 승인이 된 경우 예금주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은행에 신고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를 포함하여 참가은행이 보상한다.<신설 2016.2.1>

제4조(카드의 위조, 변조시 손실부담 및 면책) ① 은행은 카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은행의 1년만기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당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개정 2012. 9.1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개정 2012. 9.18>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이용자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방치한 경우
4. 제3자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노출 또는 누설된 카드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경우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5조(카드의 해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카드를 발급한다.

- 가. 예금·신탁계좌를 해약할 때
- 나. 카드가 훼손·오손되어 사용할 수 없을 때
- 다. 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반환을 요구할 때

제6조(양도 및 담보제공) 카드는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제7조(기타)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구 외환은행), 예금·신탁약관, CD공동이용업무규약 및 금융IC카드공동업무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 9.18]